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교전국가에 대한 무역 제한·금지조치 의무화〉
■김준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185호)

2024.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준형의원 등 17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23.
3. 회부연월일 : 2024. 9.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안보 및 국제평화 유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쟁·사변 중의 국가에 구리 등의 물품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상으로도 교전의 일방 당사국에 무기를 수출한 사례가 없음.

그런데 최근 정부 관계자들은 교전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바, 이는 한반도 안보에 위기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최근의 조사에서 확인된 국민여론에도 반하는 것임.

이에 전쟁·사변 또는 천재지변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물품 등의 수출과 수입 제한·금지 조치를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함으로써 전쟁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지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헌법에 따른 국제평화 유지 의무를 이행하려는 것임(안 제5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우리나라 또는 교역상대국에 전쟁·사변·천재지변이 있을 경우 물품 등의 수출입 제한·금지 조치를 강행규정화하여, 교전 일방 당사국에 대해서는 무기 수출 등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 등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 수입, 경유, 환적(換積) 또는 중개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제5조(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 ----- ----- ----- -----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하고, 제4호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증진하되, 법령·조약상 필요한 경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도로 무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¹⁾,

1) 「대외무역법」

제3조(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 등) ① 우리나라의 무역은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조장

교역상대국에 전쟁·사변·천재지변이 있거나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²⁾ 등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출입 제한·금지 등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전조사, 관계부처 및 교역상대국과의 협의절차를 거쳐 특별조치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한 후 이를 고시하고 있음.

즉,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에 따라 이라크, 소말리아, 북한 등에 대한 무역 특별조치를 규율하고 있으며, 최신 UN 안보리 결의 사항 등을 반영하여 특별조치 내용을 조정함.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부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 또는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에 무역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2) 「대외무역법」 제5조제1항 각 호

1.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의 무역 상대국(이하 “교역상대국”이라 한다)에 전쟁·사변 또는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
2. 교역상대국이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우리나라의 권익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3.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무역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할 경우
4.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 4의2.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공조에 따른 교역여건의 급변으로 교역상대국과의 무역에 관한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5. 인간의 생명·건강 및 안전, 동물과 식물의 생명 및 건강, 환경보전 또는 국내 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표 2] 무역제한특별조치 예시: 이라크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3장 이라크에 대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제19조(적용범위)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수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이라크를 도착항으로 하는 수출 2. 이라크를 원산지 또는 선적항으로 하는 수입 제20조(특별조치의 내용) 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로서 무기, 탄약, 군용 차량 및 장비, 준 군용장비 및 군용관련 부품은 이라크에 수출 및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이라크정부 및 이라크에 주재하는 미·영 등 연합당국에 대한 물품 등은 제외한다. ②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서 도난되었거나 도난되었다고 합리적 의심이 가는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HS 97류)은 수입할 수 없다.

그런데 현행 특별조치는 모두 UN 안보리 결의 등 국제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제4호)이고, UN 안보리 결의 등 없이 교전 중인 국가에 대해 개별적으로 특별조치(제1호)를 취하는 선례는 없는 것으로 보임.

교전 중인 국가에 무기나 주요 전략물자 등의 수출을 허가하면 다른 일방과의 외교적·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수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의무적으로 특별조치를 취하게 되면 불필요한 갈등에 연루되지 않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천재지변 등이 있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수출입 제한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는데, 천재지변 상황·피해 정도 등에 따라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동 법률은 수출입 제한을 최소한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쟁 중인 모든 교역상대국에 대해 수출입을 제한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및 국방부 등 관련 부처³⁾는 현행 제량규정을 개정안과 같이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면 외교 상황에 따른 수출입 및 인도적 차원의 수출입 등 필요상황이 발생할 때 유연한 대응이 어려워지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므로, 동 개정안 심사시 이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56

3) 타 부처 의견

부처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외교부 (10.10.)	수출입 제한·금지 강행규정화에 따른 실익에 비해, 무역상대국과의 양자 관계, 국제 정세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대처가 필요한 외교 사안 관리의 유연성 제약이 클 것으로 우려됨
국방부 (10.18.)	전쟁·사변 등의 경우라 하더라도 인도적 차원의 수출입이나 외교 상황에 따른 수출입은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사안별로 유연한 판단 필요